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역기준 위반 농장 대한 사육제한 등 조치기준 알림

1. AI 발생 관련 가금 농장 점검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2. AI 발생 관련 가금 농장 특별전담반 점검결과, 가금 농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실, 방역실, 울타리 등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가금 농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러한 농장으로 인해 AI가 발생 또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지자체는 아래의 방역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하는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반사항)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또는 담장, 야생동물의 차단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설치
- (적용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4항 및 제60조제1항
- (적용농장) 닭, 오리 사육농장(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사육제한 등 명령 조치
 -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100만원, (2회) 400만원 (3회) 800만원
 - 위반 농장의 미설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하여 가금 출하 후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 조치.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세종특별자치시(농업축산과장), 제주특별자치도(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동물방역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전라남도(동물방역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충청남도(동물방역위생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전라북도(동물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장), 역학조사과장, (사)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주무관 **노규진** 사무관 **박경일** 방역정책과장 **최명철** 전결 2021. 01. 13.

협조자

시행 방역정책과-494 (2021. 01. 13.) 접수 M00001650933 (2021. 1. 14.)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3층 357호 방역 / http://www.mafra.go.kr
정책과 (어진동)

전화번호 044-201-2520 팩스번호 044-868-0628 / nh5685@korea.kr / 대국민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